

## 찾아가는 안전체험캠프 운영 준수사항

1. 운영자는 체험학습 세부일정표대로 체험학습을 실시한다.
2. 안전체험학습 운영 시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어야 한다.  
사고발생시 사)어린이안전학교대표이사가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3. 안전체험학습 운영이 지도강사 2명이 1조가 되어 교대로 행사를 실시한다. ( 1명은 초등학생 질서유지 1명은 체험학습 진행 )
4. 운영자의 실수로 교육 미실시 될 경우 강사료는 감액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.
5. 운영자는 교육종료 후 학교장이 확인한 교육확인서를 서대문구청에 제출한다.
6. 안전체험학습 진행시 마다 학습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교육실시 결과를 제출한다.